

2

2020

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농정 이슈

◆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응급실시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¹⁾

I. 개요

- 2018년 8월 초, 랴오닝성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사례가 보고된 후 2019년 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음. 이에 2018년 9월 20일, 중국농업농촌부는 돌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신속히 박멸하여 양돈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였고, 이후 연속적인 관련 정책 또는 규정을 발표해왔음.
-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박멸하고, 양돈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돈육제품의 공급 보장을 위해 관련 법규에 의거 《아프리카돼지열병 응급실시방안(非洲猪瘟疫情应急实施方案(2020))》을 제정·공포(2020.2.29.)함.
 - * 관련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중대한 동물 전염병 응급조례》, 《국가 돌발 중대한 동물전염병 응급예비안》 등
-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보고와 확인절차, 특별중대(I급), 중대(II급), 대(III급), 일반(IV급) 등 등급별로 전염병 상황대응, 유사, 의심 및 확진 전염병에 대한 응급처리, 역학 조사, 봉쇄 및 해제,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됨.

II. 아프리카돼지열병 응급실시방안(2020년) 주요 내용

1. 전염병의 보고와 확인

- 조직이나 개인이 돼지에서 이상 상황 발견 시, 현지 축산 수의 주관기관·동물위생감독기구 또는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기구에 즉시 신고해야 함.

1) 이 자료는 주중한국대사관 우만수 농무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제작성한 것임.

- 현(縣)급 이상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기구는 신고를 접수한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규범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유사 사례 기준에 부합하면 유사 전염병으로 판정하고 즉시 샘플 채취 및 검측을 실시함. 검측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의심 사례로 확정하고,
 - － 성(省)급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기구 실험실의 검측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확정진단으로 판정하며, 관련 부서는 전염병 보고·조사 및 샘플의 채취·운송·검측 등의 작업을 할 때 제때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함.
- 성(省)급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기구는 확진한 후 전염병 정보를 신속히 중국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센터에 보고하고, 병적물질 샘플과 역학 조사 등 배경 정보를 중국동물위생과역학센터에 보내 비치해야 함. 중국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센터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농업농촌부에 보고함.
- 돼지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하여는
 - － 합법적 또는 유효한 검역증명 등이 없이 법률·규정을 위배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 － 합법적인 검역증명이 있고 또한 유효 기간 내인 경우에 전염병 처리·살처분 보조비용은 전염병 발생지·발송지 소재 지방에서 규정에 따라 각기 부담한다. 전염병은 발생지에서 보고·처치를 책임지고 발송지로 통지함.
- 각 지역 세관·교통·임업·초지 등 부서에서 유사 사례를 발견한 경우
 - － 즉시 소재지 성(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소재지 성(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역학 조사·샘플 채취·검측·진단·정보 보고 등 작업을 해야 함.
 - －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세관·교통·임업·초원 부서와 공동으로 전염병 처리 작업을 잘 완수해야 함.
- 농업농촌부는 확진결과와 역학 조사 정보에 따라 전염병을 판정하고 발표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성(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에 전염병의 판정 및 발표를 위임할 수 있음.

2. 전염병 상황 대응

(1) 전염병 상황 대응 등급

- 전염병의 유행 특징, 위해 정도와 파급 범위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을 특별중대(Ⅰ급), 중대(Ⅱ급), 대(Ⅲ급), 일반(Ⅳ급) 4개 등급으로 분류함.

가. 특별 중대(特別重大)(Ⅰ급)

- 전국에서 새롭게 발병한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21일 내에 다수의 성(省)에서 발생되고 돼지의 산업발전과 경제사회의 운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경우.

나. 중대(重大)(Ⅱ급)

- 21일내에 5개 이상의 성(省)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전염병 구역이 집중적으로 연결되며 또한 전염병이 계속 확산하는 추세인 경우.

다. 대(較大)(Ⅲ급)

- 21일 내에 2개 이상 5개 이하의 성(省)에서 전염병 발생.

라. 일반(一般)(Ⅳ급)

- 21일 내에 1개 성(省)에서 전염병 발생.

※ 필요시, 농업농촌부는 방역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돌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구체적인 등급을 정할 수 있음.

(2) 전염병 조기경보

- 특별 중대(Ⅰ급), 중대(Ⅱ급), 대(Ⅲ급)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농업농촌부는 사회에 전염병 조기경보를 발표함.
- 일반(Ⅳ급)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농업농촌부는 관련 성(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에 전염병 조기경보의 발표를 위임할 수 있음.

(3) 등급별 대응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각 지역과 관계 부처는 속지 관리·등급별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응급대응을 함.

가. 특별 중대(I 급) 전염병 대응

- 농업농촌부는 전염병 사태와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국무원에 I급 대응과 국가대응지휘기구의 가동을 청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농업농촌부에서 I급 대응을 개시하고 여러 부서로 구성된 대응지휘기구를 가동함.
- 전국의 모든 성(省)의 성(省)·시(지역)·현(縣)급 인민정부는 대응지휘기구를 즉시 가동해 예방·통제 일일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긴급 역학 조사와 응급모니터링업무를 전개 함.
- 발견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 처치를 취하고, 각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공동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처리해야 함.

나. 중대(II 급) 전염병 대응

- 농업농촌부 및 전염병이 발생한 성(省)의 성(省)·시·현(縣)급 인민정부는 즉시 II급 대응과 대응지휘기구를 가동해 예방·통제 일일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긴급 역학 조사와 응급모니터링업무를 전개 함.
- 발견한 전염병에 대해 즉시 응급 처치를 취한다. 각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공동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처리해야 함.

다. 대(III 급) 전염병 대응

- 전염병이 발생한 성(省)·시·현(縣)급 인민정부는 즉시 III급 대응과 대응지휘기구를 가동해 예방·통제 일일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긴급 역학 조사와 응급모니터링업무를 전개함.
- 발견한 전염병에 대해 즉시 응급 처치를 하며, 각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공동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처리해야 함.
- ※ 농업농촌부는 전염병이 발생한 성(省)의 응급처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조직해 전염병 처치에 협조하고 즉시 관련 성(省)에 상황을 통보하며, 필요시, 농업농촌부는 여러 부서로 구성된 대응지휘기구를 가동함.

라. 일반(Ⅳ급) 전염병 대응

- 전염병이 발생한 성(省)의 시·현(縣)급 인민정부는 즉시 Ⅳ급 대응과 대응지휘기구를 가동해 예방·통제 일일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긴급 역학 조사와 응급모니터링을 조직함.
- 발견한 전염병에 대해 즉시 응급 처치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공동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전염병이 발생한 성(省)의 성(省)급 축목 수의 주관부서는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응급 처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조직해 기술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 － 소재 성(省)의 관련 지역과 부서에 통보하고, 즉시 예방·통제 조치를 취하며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성(省)급 축목 수의 주관부서는 전염병 사태와 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성(省)급 인민정부에 여러 부서로 구성된 대응지휘기구의 가동을 청함.
 - ※ 특별중대(Ⅰ급)·중대(Ⅱ급)·대(Ⅲ급)·일반(Ⅳ급) 등급의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와 그 제품이 고위험 구역에서 저위험 구역으로 운송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돼지와 생돼지 제품의 운송에 대해 구분 관리를 실시하며 해당 구역의 돼지 교역장소를 폐쇄하며, 구체적인 운송 관리감독 방안은 농업농촌부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실시간 조정함.

(4) 대응 등급의 조정과 종료

- 전염병 사태와 예방·통제 수요에 따라 농업농촌부 또는 관련 성(省)급 축목 수의 주관부서는 전염병 사태에 대하여 위험평가 분석을 하고 즉시 대응 등급의 조정 또는 종료를 건의함.
- 대응 가동을 결정한 인민정부 또는 응급지휘기구에서 대응 등급을 조정하거나 종료시킴.

3. 응급처리

(1) 유사와 의심 전염병에 대한 응급처리

- 전염병 의심사례와 유사 사례가 발생한 관련 장소에 대하여 엄격한 격리와 감시를 실시

하고, 동 장소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축사육장(사육자)에 대해 샘플 채취 및 검측을 진행함.

- 전염병에 쉽게 감염되는 동물과 그 제품·사료와 깔짚·폐기물·운반도구·관련 시설설비 등의 이동을 금지하고, 해당 장소 내외 환경을 엄격히 소독하며, 필요시 폐쇄·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확진 전염병에 대한 응급처치

- 전염병 확진 후, 현(縣)급 이상 축산 수의 주관부서는 전염병 지점·전염병 구역·위험 구역을 즉시 구획하고, 역추적·추적 등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 본 급 인민정부에 해당 등급의 응급처치를 건의하고, 현지 인민정부에서 법에 의해 결정을 내림.

가. 전염병 지점·전염병 구역·위험 구역의 확정

- (전염병 지점, 疫点) : 병이 발생한 돼지가 소재한 지점. 생물 안전 방호 수준이 양호하고 규모가 있는 가축사육장에 대해 발병 돈사와 기타 돈사가 효과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경우, 발병 돈사를 전염병 지점으로 할 수 있음
 - 발병 돈사와 기타 돈사가 효과적으로 격리되지 않은 경우, 동 양돈장을 전염병 지점으로 하거나 또는 발병 돈사 및 그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돈사를 전염병 지점으로 함.
 - 기타 가축사육장(사육자)에 대해서는 발병 돼지가 소재한 가축사육장(사육자)를 전염병 지점으로 함.
 - 이미 전염병이 발견되거나 교차 감염우려가 있을 경우, 발병 돼지가 소재한 양식 구역·마을 또는 발병 돼지 소재 가축사육장(사육자) 및 역학 관련 장소(호)를 전염병 지점으로 함.
 - 방목돼지인 경우, 발병 돼지의 활동장소를 전염병 지점으로 함.
 - 운송과정에서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발병 돼지를 운송한 차량·선박·비행기 등 운송도구를 전염병 지점으로 함.
 - 목축 교역과 격리 장소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장소를 전염병 지점으로 함.
 - 도축·가공 과정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도축·가공공장(점)(전염병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육제품 생산·가공 공간과 창고 제외)을 전염병 지점으로 함.
- (전염병 구역, 疫区) 일반적으로 전염병 지점으로부터 반경 3km 내의 구역을 말함.

- (위험 구역, 受威胁区) 일반적으로 전염병 구역으로부터 반경 10km 내의 구역을 말하며, 멧돼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위험 구역은 전염병 구역으로부터 반경 50km 내의 구역을 말함.

※ 전염병 지점, 전염병 구역과 위험 구역을 구획할 경우, 현지 천연적 장애물(예로 하천, 산맥 등), 인적 장애물(도로, 보호망 등), 행정구역, 사육환경, 멧돼지 분포 등의 상황과 역학 조사 및 위험 분석결과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시, 특수한 공급과 보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확정해야 함

나. 봉쇄

- 전염병 발생 소재지의 현(縣)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는 본(本)급 인민정부에 전염병 구역에 대한 봉쇄를 요청하고 현지 인민정부에서 법에 따라 봉쇄 관련 명을 내림.
- 전염병 구역이 행정 구역을 넘어설 경우, 관련 행정구역 공동의 직속 상급 인민정부에서 전염병 구역에 대해 봉쇄를 하거나 또는 각 관련 행정구역의 직속 상급 인민정부에서 공동으로 전염병 구역에 대해 봉쇄를 함.
- 필요할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에 전염병 구역에 대한 봉쇄의 실행을 일임할 수 있음.

다. 전염병 지점 내에 대한 조치

- 전염병 발생 소재지의 현(縣)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즉시 전염병 지점 내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 함.
- 병으로 죽은 돼지·살처분한 돼지와 그 제품에 대해 모두 무해화 처리함
- 배설물·음식물 폐기물·오염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료와 깔짚·오수 등에 대해 무해화 처리함.
- 오염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교통도구·기기·돈사·현장 환경 등에 철저한 청소 및 소독과 쥐·파리·모기 박멸 등의 조치를 함.
- 출입인원·운송도구와 관련 시설설비는 규정에 따라 소독을 하며, 감염되기 쉬운 동물의 출입과 관련 제품의 출고를 금지함.

- 전염병 지점이 돼지 도축장인 경우, 돼지 도축 등의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함.

라. 전염병 구역에 대한 조치

- 전염병 발생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절차와 수요에 따라 경고 표식을 세우고, 임시 검사 소독소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관계자와 차량에 대해 소독함.
- 감염되기 쉬운 동물의 출입과 관련 제품의 출고를 금지하고, 돼지 교역장소를 폐쇄하며 철저한 소독을 함.
- 전염병 구역 내 살처분 하지 않은 가축사육장(사육자)과 관련 돈사에 대해 엄격한 격리 관찰을 진행하고 응급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청소와 소독의 횟수를 증가하고 샘플 검측을 진행 함.
- 병원학 검측을 거쳐 음성으로 나온 돼지는 계속 사육 또는 지정경로를 거쳐 인근에서 도축할 수 있음.
- 전염병 구역 내의 돼지 도축 기업은 도축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 수의기관의 감독과 지도 하에 혈액·조직과 환경 샘플을 채취하여 검측을 의뢰하고 철저한 청소와 소독을 함.
- 검측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전염병 발생 소재지 현(縣)급의 직속 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의 위험평가를 거쳐, 생산을 회복할 수 있음.
- 봉쇄기간 내에 전염병 구역에서 전염병이 재발하거나 병원학에서 양성으로 검측된 경우, 전염병 지점 내에 대한 처치 조치에 준하여 처치해야 함
- 역학 조사와 위험 평가를 거쳐 전염병 확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전염병 구역의 범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음.
- 전염병 지점·전염병 구역 내에서 살처분한 돼지는 현지에서 무해화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전염병 구역 밖으로 운송하여 무해화 처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축산 수의 부서의 관리·감독 하에 밀폐된 운송도구(차량)로 운송하고 누출을 엄격히 방지해야 하며, 운송 전과 하역 후 운송도구(차량)에 대해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함.

마. 위험 구역에 대한 조치

- 돼지의 전입·출고를 금지하고 돼지 교역 장소를 폐쇄 함.
- 전염병 발생 소재지의 축산 수의 부서는 즉시 가축사육장(사육자)에 대해 전면적인 임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샘플을 채취해 검측을 맡기고 전염병 동태를 파악해 방제 조치를 강화함.
- 《동물방역조건 합격증》을 취득한 독립법인이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병리학 검측을 받은 결과 바이러스 음성판정이 나온 가축사육장(사육자)의 비육돈은 소재 성(省)의 조건에 부합하는 도축업체에서 ‘점대점(전담)’ 운송을 실시하고,
 - － 판매하는 종모돈과 상품 자돈(체중이 30kg이하인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돼지)은 소재 성(省) 범위 내에서 운반할 수 있음.
- 위험 구역 내의 돼지 도축 기업은 도축 활동을 중단하고,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함.
- 현지 축산 수의부서에서 진행하는 혈액·조직과 환경 샘플에 대한 검측을 통과하고, 전염병 발생 소재지 현(縣)급의 직속 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의 동물 전염병 위험 평가를 통과한 후 생산을 회복할 수 있음.
- 봉쇄기간 내에 위험 구역에서 전염병이 재발하거나 병원학에서 양성으로 검측된 경우, 전염병 지점 내에 대한 처치 조치에 준하여 처치함.
- 역학 조사와 위험 평가를 거쳐 전염병 확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위험 구역의 범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음.

바. 운송 도중에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 전염병 발생 소재지의 현(縣)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운수하는 모든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고, 병사한 돼지·살처분 한 돼지와 그 제품에 대해 모두 무해화 처리를 함.
- 운송 도구는 일시 압류하여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하고 돌려보내서는 안 됨.
- 현지는 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전염병 구역으로 규획여부 및 상응하는 처치 조치를 취할지를 정할 수 있음.

(3) 멧돼지와 충매(虫媒) 통제

- 가축사육장(사육자)은 생물안전방호조치를 강화하고, 사육하는 돼지와 멧돼지의 접촉을 피해야 함.
- 각 지역 임업과 초원부서는 전염병 구역, 위험 구역과 주변 지역의 멧돼지 분포상황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함.
- 물령 진드기가 분포한 지역에 있는 전염병 지점·전염병 구역·위험 구역의 돼지사육자는 물령 진드기 박멸 등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함.
- 축산 수의부서는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 작업을 강화하고, 임업 및 초원부서와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서로 통보함.

(4) 긴급 역학 조사

가. 발병 상황 조사

- 전염병 지점·전염병 구역·위험 구역 및 현지에서 쉽게 감염이 되는 동물의 사육 상황과 멧돼지 분포 상황 및 전염병 지점의 주변 지리 상황을 파악하고
- 진단규범(첨부1)에 근거하여 전염병 구역과 위험 구역 내에서 전염병 사례를 검색하며 최초 발병 사례와 발병 순서를 밝히고, 발병 동물의 수량·사망 수량을 통계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염병 발생 상황을 분석함.

나. 추적과 역추적 조사

- 최초 발병 사례가 출현하기 전 21일 이내와 전염병 발생 후 격리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염병 지점에서 내보낸 쉽게 감염되는 동물·관련 제품·운반 도구 및 밀접 접촉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 역학 관련이 있는 양식·도축 가공 장소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측에 맡기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평가함.
- 최초 발병 사례가 출현하기 전 21일 이내에 전염병 지점으로 반입한 쉽게 감염되는 동물·관련 제품·운반 도구와 인원의 왕래 상황 등에 대해 추적하고, 역학 관련이 있는 장소·운반 도구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측에 맡기고 전염병 근원 분석을 진행함.
- 전염병 추적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위험 분석 상황에 따라 즉시 격

리 관찰·샘플 검측 등 처치 조치를 취해야 함.

(5) 응급 모니터링

- 전염병 지점이 소재한 현(縣)·시는 즉시 모든 가축사육장소에 대해 응급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중점 구역·핵심 절차와 이상 사망한 돼지에 대하여 모니터링 수위를 높여 전염병 잠재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도록 함.
- 돼지 교역장소·도축 장소·무해화 처리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맞춤형 모니터링을 실시함.
- 수입 항구·교통 허브 주변 지역·중국-유럽 철도 연선 지역과 화물 하역 구역 주변의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야 함.
- 돼지와 멧돼지의 이상 사망상황을 집중 체크하고 응급 모니터링에서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격리 관찰·샘플 검측 등 처치 조치를 취해야 함.

(6) 봉쇄 해제와 생산 복귀

가. 전염병 지점이 가축사육장, 교역장소인 경우

- 전염병 지점·전염병 구역과 위험 구역에서 살처분 범위 내의 사망 돼지와 살아있는 돼지를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하고
- 이후 21일 뒤에 새로운 발병 현상이 없고, 또한 전염병 지점과 도축 장소·시장 등 역학 관련 장소의 샘플 검측결과 음성으로 판정되고, 전염병 발생 소재지 현(縣)급의 직속 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의 검수를 통과한 경우
 - 소재지 현(縣)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는 원 봉쇄 명을 내린 인민정부에 봉쇄 해제 신청을 올린다. 해당 인민정부는 봉쇄 해제를 명하고 인접 지역과 관련 부서에 통보함.
- 봉쇄 해제 후 병든 돼지 또는 양성 반응 돼지가 소재했던 장소에서 계속 양돈을 하고자 할 경우,
 - 5개월의 휴업을 경과하고 환경 샘플 검측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또는 보조 돼지를 집어 넣어 45일간(동 기간 내에 돼지는 출고할 수 없음)의 사육과 임상 관찰을 거친 뒤 보조 돼지가 병원학 검측에서 음성으로 판정되고 관찰기간 동안 임상에서 이상 현상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함.

나. 전염병 지점이 돼지 도축 가공기업일 경우

○ 도축장소에서 전염병 자진 보고한 경우,

- 도축 장소와 역학 관련 차량에 대해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진행하고, 환경 샘플과 생돈 제품에 대한 현지 축산 수의부서의 검측결과가 합격으로 나오고 48시간 뒤에 전염병 발생 소재지 현(縣)의 직속 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의 동물 전염병 위험 평가를 통과한 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음.
- 전염병 발생 전에 생산한 생돈 제품은 샘플 검측을 진행하고 검측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 한해 판매 또는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축산 수의부서에서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 도축 장소와 역학 관련 차량에 대해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진행하고, 환경 샘플과 생돈 제품에 대한 현지 축산 수의부서의 검측결과가 합격으로 나오고 15일 뒤에 전염병 발생 소재지 현(縣)의 직속 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의 동물 전염병 위험 평가를 통과한 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음.
- 전염병 발생 전에 생산한 생돈 제품은 샘플 검측과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검측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위험 평가가 요구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 판매 또는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전염병 구역 내의 돼지 도축기업은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을 하고, 환경 샘플과 생돈 제품에 대한 현지 축산 수의부서의 검측결과가 합격으로 나오고 48시간 뒤에 전염병 발생 소재지 현(縣)의 직속 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의 동물 전염병 위험 평가를 통과한 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음.

(7) 살처분 보조

- 강제 살처분한 돼지와 사육한 멧돼지에 대해 보조 규정에 부합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하고, 살처분 보조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비례에 따라 부담함.

4. 정보발표와 과학지식 보급 홍보

- 전염병 정보와 예방·통제 작업의 진전상황을 제때에 발표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 상황을 통보함.
- 농업농촌부의 위임없이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각 부서는 전염병의 발생 정보와 제거 정보를 무단으로 발표할 수 없으며,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퍼뜨리는 행위를 단호하게 단속함.

- 긍정적·과학적인 홍보를 고수하고, 적시에 정확한 해석과 메시지를 전하며, 예방·통제 홍보에 만전을 기함.
- 예방·통제 지식을 과학적으로 홍보·보급하고, 다수 소비자의 우려와 관심에 즉시 답변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생돈제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함.

5. 사후처리

(1) 사후 평가

- 응급대응 완료 후, 전염병 발생지 인민정부 축산 수의 주관부서는 관련 단위를 통해 응급 처치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효능평가와 결합하여 차이점과 개선조치를 작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에 보고함.
- 대(III급)의 전염병은 성(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중대(II급) 이상의 전염병은 급수별로 농업농촌부에 보고해야 함.

(2) 표창 장려

- 전염병 응급처치를 마친 후 응급 작업에서 태도가 결연하고 행동에 결단성이 있으며 원활하게 조화를 이루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 단위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용기 있게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 개인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는 표창·장려하고 공식적으로 표창함.

(3) 책임추궁

- 전염병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양돈·운송·교역·도살 사업자와 직무 태만·직무 과오·독직 등 행위가 있는 관련 부서의 실무자에 대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함.

(4) 보조금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통해 응급처치에 참여하여 병을 일으키고, 불구가 되고, 사망한 인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을 주고 위로를 해야 함.

6. 부칙

- 본 실행방안에서 수량과 관련이 있는 서술 중 ‘이상’은 본수를 포함하며, ‘이하’는 해당 수

를 포함하지 않는다.

- 홍콩·마카오에 공급하는 돼지 및 그 제품의 방역감독에 대하여 본 실행방안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농업농촌부·세관총서에서 별도로 상의하여 정함.
- 사육 멧돼지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사육 돼지의 전염병 처치에 따르며, 멧돼지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 조사와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본 방안을 참조하여 관련 조치 조치를 취하고, 멧돼지 전염병이 사육 돼지와 사육 멧돼지에 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 통상적인 모니터링에서 가축사육장 샘플이 양성으로 나타나면 즉시 격리 관찰하고 긴급 역학 조사를 실시하며 제때에 상응한 처치를 조치함. 동 양성반응의 돼지무리에서 지난 21일 내에 이상증상의 사망이 있었고 또한 성(省)급 재확인을 거쳐 병원학 또는 혈청학이 여전히 양성으로 나타나면 전염병으로 처치함.
 - 지난 21일 내에 이상증상의 사망이 없으나 성(省)급의 재확인을 거쳐 병원학 또는 혈청학이 여전히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양성반응의 돼지 및 같은 무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중국 동물 위생과 전염병학센터에 보내 재검함.
 - 남은 돼지 무리는 격리하여 지속적으로 21일간 관찰하며 이상이 없고 음성으로 검출된 돼지는 부근에서 도축하거나 계속 사육할 수 있음.
 - 양성 검출 정보는 요구에 따라 중국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센터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통상적인 모니터링에서 도살장소의 샘플이 양성으로 나타나면 즉시 긴급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지점에 준해 상응한 조치 조치를 취함.
- 사료와 그 첨가제·돼지 관련 제품에서 양성이 검출되면 즉시 밀봉 보관하고, 평가를 거쳐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밀봉 보관한 관련 사료와 그 첨가제·돼지 관련 제품을 소각함.
- 동물격리장소·동물원·야생동물원·종자 보존 장소·동물실험장소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본 방안에 따라 상응한 처치를 함. 필요할 경우, 역학 조사·실험실 검사·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성(省)급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성(省)급 축산 수의 주관부서의 동의하에 합리적인 살처분 범위를 확정함.
- 본 실시방안은 농업농촌부에게 책임지고 해석함.

Ⅲ.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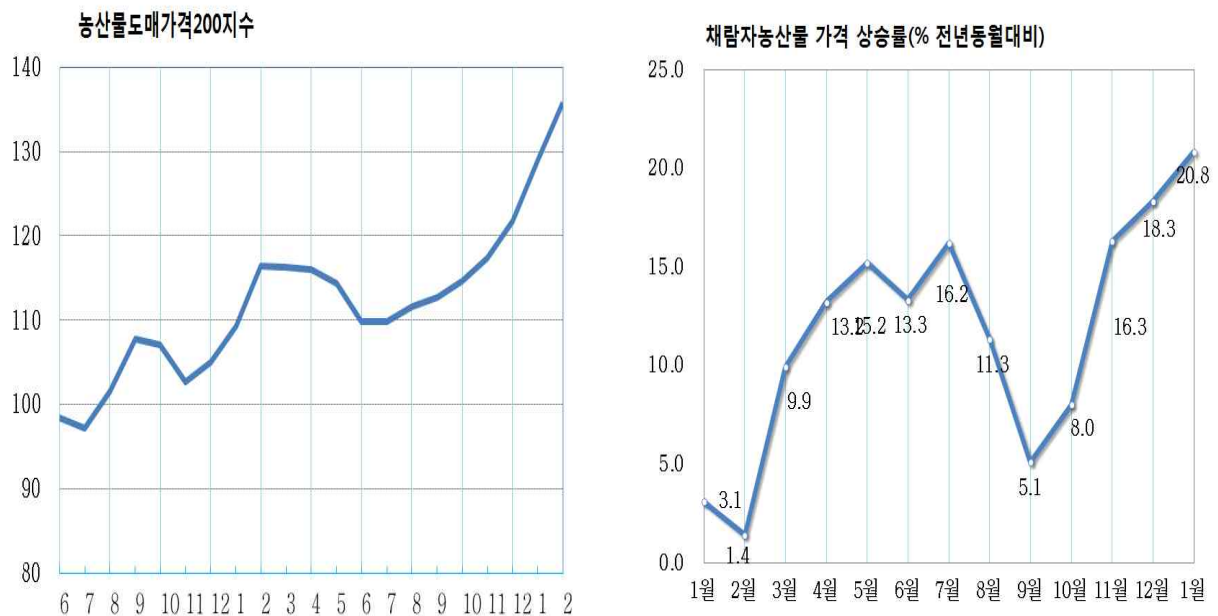
- 중국은 2018년 8월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1년여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중국 양돈산업과 돼지고기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
-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방역 정책을 장기전으로 국면 전환하여 방역과 양돈산업 재건 및 돼지고기 수급 대책을 동시에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 정책은 백신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돈산업 정책은 돼지 생산 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이나 개별 농가이 양돈 참여를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중국인의 식문화 측면에서 보면, 돼지고기는 쌀이나 밀 등 식량에 버금가는 주요 생필품의 하나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장바구니 물가의 체감 상승률은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
- 중국 농업농촌부는 돼지고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생돈 생산 안정 및 시장 공급 보장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종돈장과 규모화 양돈장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 응급실시방안(2020)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중국 정부의 최신 조치로 현시점에서의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등급별 전염병 상황대응, 전염병에 대한 응급처치, 역학 조사, 봉쇄 및 해제, 사후관리 등 종합적·체계적 지침을 제시하였음.

가격 동향

◆ 농산물 도매시장가격²⁾

- 2020년 1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129.03으로 지난 12월 대비 7.27p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2.68p 큰 폭 상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영향에 기인
- 2020년 1월 채람자(菜篮子)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20.8%로 지난 12월 대비 2.5%p 추가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17.7p 상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영향에 기인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200지수'는 2015년=100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2)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채소 32개, 과일 11개, 축산물 7개, 수산물 49개, 식량 7개, 유지작물 5개)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200개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함.

- 2020년 1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12월에 비해 엽근채소, 양념채소, 버섯 전반적 상승, 코로나 영향으로 체철인 딸기소비가 영향을 받으며 하락하고 기타 과일 모두 상승. 도매시장가격 전반적 상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영향에 기인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9년 9월~2020년 1월)

단위: 원, %

품목		2019년 9월~2020년 1월					1월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6,981	16,745	16,704	16,645	16,585	-0.36	1.85
	콩(1kg)	918	917	950	959	1,009	5.14	9.28
엽근채소	배추(10kg)	2,291	1,968	1,730	1,926	2,484	29.01	58.36
	무(18kg)	5,216	4,143	3,713	4,250	4,925	15.89	11.95
	양배추(8kg)	1,846	1,628	1,704	2,210	2,820	27.58	61.71
	당근(20kg)	7,648	6,871	6,655	6,765	7,285	7.69	-7.32
	감자(20kg)	7,379	7,105	7,254	7,736	8,628	11.53	13.09
양념채소	건고추(600g)	2,913	3,102	3,324	3,328	3,355	0.82	13.35
	양파(kg)	339	329	354	476	519	9.07	65.31
	마늘(kg)	1,354	1,321	1,389	1,484	1,539	3.75	80.29
	대파(kg)	504	437	388	385	472	22.47	-2.18
	쪽파(kg)	1,004	974	922	973	1,005	3.35	-4.72
과일	사과(부사, 15kg)	26,280	19,413	17,045	16,854	17,273	2.49	-6.65
	배(풍수, 15kg)	11,144	9,707	9,658	10,022	10,046	0.24	-20.79
	복숭아(kg)	718	844	873	934	1,084	16.05	-13.71
	포도(거봉, 5kg)	5,618	5,237	5,690	6,137	6,731	9.68	-6.51
	감귤(만다린, kg)	825	694	574	646	747	3.50	18.10
	감(10kg)	6,907	5,270	5,823	6,966	7,252	4.10	26.55
과채	딸기(2kg)	7,527	7,142	8,784	8,985	8,531	-5.06	-14.48
	토마토(10kg)	4,380	5,554	6,139	9,160	10,961	19.67	24.07
	오이(kg)	483	605	850	948	1,103	16.36	20.33
	수박(kg)	345	460	554	653	767	17.47	17.01
축산물	쇠고기(kg)	11,297	11,369	11,648	11,760	11,973	1.81	18.45
	돼지고기(kg)	6,009	7,448	7,799	7,289	7,811	7.15	156.35
	닭고기(kg)	3,172	3,244	3,431	3,244	3,147	-2.96	17.94
버섯	느타리버섯(2kg)	2,412	2,181	1,963	2,133	2,300	7.80	12.67
	새송이버섯(2kg)	2,180	2,018	1,966	2,130	2,474	16.16	-0.64
	팽이버섯(2kg)	2,116	2,128	2,179	2,351	2,833	20.52	9.15
	표고버섯(2kg)	3,844	3,843	3,753	3,748	3,948	5.35	3.41
임산물	밤(kg)	1,311	1,571	1,630	1,778	1,464	-17.69	-18.98
	대추(kg)	955	1,044	2,246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国农业信息网 (<http://www.agri.gov.cn>)

◆ 소비자물가

-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5.4%로 두달 연속 5%대 상승률 기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도시봉쇄와 교통제한 조치에 따른 식품공급량 위축에 기인
- 식품가격지수는 17%로 전월대비는 2.7p 상승

- 1월 식품가격 상승 (y-y)은 육류와 신선채소가 주도 (각 76.7%, 17.1% 상승)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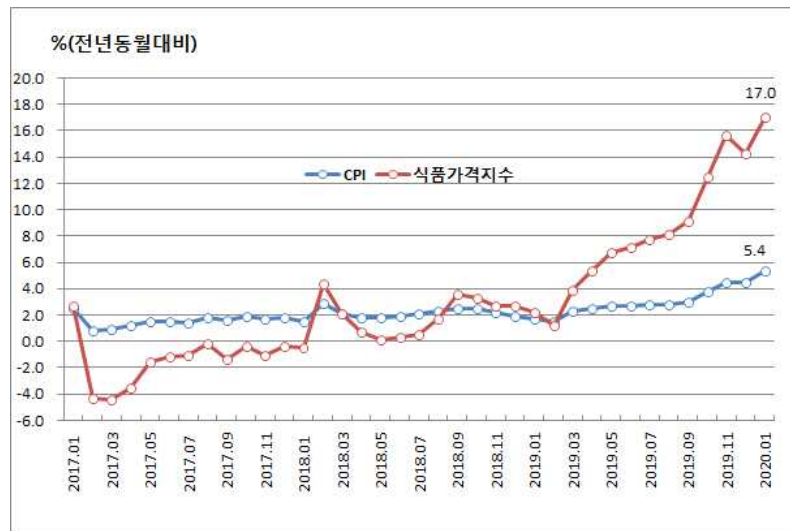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구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9.10	'19.11	'19.12	'20.1	'19.10	'19.11	'19.12	'20.1
소비자물가지수(CPI)	0.9	0.4	0	1.4	3.8	4.5	4.5	5.4
◦ 식품·담배 및 주류	2.7	1.5	-0.2	3.1	11.4	13.9	12.9	15.2
식품	3.6	1.8	-0.4	4.4	15.5	19.1	17.4	20.6
- 식량	0.1	0.2	0	-0.1	0.5	0.7	0.6	0.5
- 육류	14.7	4.8	-3.8	6.1	66.8	74.5	66.4	76.7
- 조란(鸡蛋)	-1.3	-0.5	-4.7	-3.2	10.4	10.1	6.2	2.4
- 수산물	-1.1	-0.5	0.1	4.5	2.7	2.4	1.3	3.8
- 신선채소	-1.7	1.4	10.6	15.3	-10.2	3.9	10.8	17.1
- 신선과일	-5.7	-3	0.6	5.5	-0.3	-6.8	-8	-5
◦ 의류 및 복장	0.3	0.3	-0.1	-0.5	1.1	1.1	0.8	0.5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1	0.1	0.2	0.6	0.4	0.4	0.2
◦ 의료보건	0.1	0.1	0.2	0.6	2.1	2	2.1	2.3
◦ 교통 및 통신	0.1	-0.3	0.2	1.4	-3.5	-2.8	-0.7	0.9
◦ 교육·문화 및 오락	0.1	-0.7	0	1.4	1.9	1.7	1.8	2.2
◦ 주택(거주)	0	0	0.1	0	0.5	0.4	0.5	0.5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8	-0.1	1.8	5.5	4.5	4.4	4.8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2016년 1월부터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agri.gov.cn>)

무역 동향

◆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19년 12월 농산물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지난 11월에 비해 4.2%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6.1% 감소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18년12월,2019년 10월~12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12월 증감률		
		12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1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4.2	0.2	0.4	0.4	4.9	-12.6	27.3	18.0
02류	육과 식용설육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22.3	1.6	1.8	2.8	19.2	60.0	33.0	-13.8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42.3	2.0	2.0	1.5	30.4	-28.2	-59.6	-28.1
06류	산수목·꽃	62.5	4.8	6.9	9.1	72.1	31.5	8.2	15.4
07류	채소	612.1	53.8	47.9	49.3	534.0	3.1	-9.0	-12.8
08류	과실·견과류	31.3	2.5	2.3	4.3	30.6	88.8	-1.9	-2.3
09류	커피·차·향신료	64.8	4.1	5.0	2.7	55.7	-46.2	-50.6	-14.0
10류	곡물	130.3	0.4	25.1	26.5	118.9	5.8	-21.4	-8.8
11류	제분공업제품	54.1	3.3	4.2	5.7	53.3	34.3	-19.4	-1.5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302.5	37.5	53.0	39.7	355.2	-25.1	-2.2	17.4
13류	식물성엑스	103.7	5.3	6.6	9.7	104.7	45.3	-19.0	0.9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5.1	0.3	0.4	0.4	5.4	17.3	42.7	5.3
15류	동식물성유지	32.9	3.3	4.7	4.3	36.7	-7.4	96.6	11.3
16류	육·어류조제품	396.5	34.4	37.0	40.1	382.9	8.5	10.5	-3.4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83.0	7.8	7.4	8.0	88.7	8.1	-0.2	6.8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40.1	3.1	3.7	6.7	39.1	80.9	5.5	-2.7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54.3	12.6	13.8	16.9	165.9	22.6	15.3	7.5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870.1	55.4	63.7	66.4	764.5	4.2	-13.9	-12.1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79.2	14.3	17.1	17.4	177.6	2.1	-1.0	-0.9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118.8	9.4	8.1	12.0	129.0	48.5	15.0	8.6
23류	조제사료	304.1	21.0	25.4	27.9	306.6	9.8	-4.4	0.8
24류	담배	23.5	2.7	1.0	4.7	20.0	362.0	43.9	-14.9
합 계		3310.1	256.3	310.9	323.8	3168.6	4.2	-6.0	-4.3

자료: 중국해관총서

- 2019년 12월 농산물 수입액은 9.8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23.1% 증가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18년 12월 ~ 2019년 10월~12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12월 증감률		
		12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1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0.51			0.03	0.39			-24.4
02류	육과 식용설육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18.51	1.88	2.49	1.47	21.86	-40.9	-25.1	18.1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4.78	3.10	3.76	2.79	21.00	-25.7	292.7	339.1
06류	산수목·꽃	1.20	0.05	0.06	0.06	0.88	0.0	76.5	-26.2
07류	채소	0.07	0.00	0.07	0.00	0.37	-97.3	-84.6	423.9
08류	과실·견과류	17.32	6.34	1.01	2.05	14.71	103.6	164.2	-15.1
09류	커피·차·향신료	2.14	0.20	0.08	0.12	1.55	51.3	-27.5	-27.3
10류	곡물	0.08				0.00			-96.2
11류	제분공업제품	2.33	0.13	0.15	0.14	1.96	-5.4	-44.2	-16.1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38.62	7.83	1.98	3.47	77.18	74.9	16.1	99.9
13류	식물성엑스	15.65	1.32	1.24	2.07	13.50	67.2	94.0	-13.8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0.03	0.00		0.00	0.04		100.0	18.2
15류	동식물성유지	6.82	0.91	0.54	0.67	6.99	22.7	49.3	2.5
16류	육·어류조제품	36.36	5.62	5.61	4.30	50.86	-23.3	26.1	39.9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01.69	9.87	9.45	16.00	94.21	69.3	28.9	-7.4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7.25	0.50	0.71	0.95	6.08	34.0	12.8	-16.2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21.80	21.95	34.33	23.53	235.13	-31.5	13.3	6.0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109.10	7.27	11.75	9.73	108.88	-17.2	11.4	-0.2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20.31	9.30	8.60	10.26	106.96	19.3	11.4	-11.1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183.57	17.94	13.59	16.63	211.25	22.3	42.8	15.1
23류	조제사료	7.01	17.94	1.06	0.67	6.10	-36.3	102.4	-13.0
24류	담배	43.13	0.57	2.64	3.13	53.06	18.5	-19.8	23.0
합 계		938.3	112.7	99.1	98.0	1032.9	-1.1	23.1	10.1

자료: 중국해관총서

◆ 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19년 12월 3대 곡물(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226.2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63.4% 증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9.8% 감소, 감소폭이 전월대비 축소
-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212.9천 톤으로 3대 곡물 수출량의 94.1%를 차지. 쌀 수출량 전월에 비해 62.9% 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2.9% 감소
- 12월 한국에 대한 쌀 수출량이 33천 톤으로 1위 기록

표 5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2019년9월 ~ 12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9년	2019년8월~2019년11월				12월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한국	148.2	0.0	0.0	33.0	33.0	0.0	-22.7	-14.6
	북한	161.6	33.5	16.7	8.2	8.6	4.3	31.0	271.2
	일본	25.6	0.0	0.0	0.1	0.3	250.0	-98.8	-65.1
	홍콩	22.1	1.8	1.7	1.8	1.9	6.4	-31.7	-6.8
	몽골	39.9	2.9	2.3	3.6	5.5	53.0	101.5	51.9
	기타	2350.3	54.3	229.8	84.0	163.6	94.8	-17.1	34.4
	합 계	2747.6	92.5	250.5	130.7	212.9	62.9	-22.9	31.5
이 중 - 중단립종쌀 (백미)	북한	161.6	33.5	16.7	8.2	8.6	4.3	31.0	271.2
	일본	24.8	0.0	0.0	0.1	0.2	125.0	-99.3	-65.9
	몽골	39.9	2.9	2.3	3.6	5.5	53.0	101.5	51.9
	한국	3.0	0.0	0.0	0.0	0.0	-100.0		
	홍콩	22.0	1.8	1.7	1.8	1.9	6.0	-32.0	-6.8
	기타	2297.1	47.0	224.3	80.1	161.2	101.2	-14.4	35.5
	합 계	2548.4	85.2	245.0	93.9	177.4	89.0	-20.9	36.9
밀	합 계	50.6	0.0	5.2	5.8	5.2	-10.5	22.4	2.1
옥수수	북한	22.9	0.0	0.0	1.7	7.7	362.6	648.8	428.1
	미국	0.0	0.0	0.0	0.0	0.0			
	캐나다	1.1	0.0	0.0	0.0	0.0		-100.0	-78.8
	기타	1.7	0.0	0.1	0.3	0.5	61.3	179.1	-32.8
	합 계	25.7	0.0	0.1	2.0	8.2	314.4	396.2	113.9
대두	한국	44.7	0.1	2.6	9.7	5.3	-45.3	-44.7	0.6
	일본	24.7	1.4	1.4	1.3	1.3	-1.1	-13.1	-7.2
	미국	0.6	0.1	0.1	0.1	0.1	-19.0	97.6	-95.5
	기타	44.5	3.7	2.5	3.7	3.3	-9.6	-33.1	-10.8
	합	114.5	5.2	6.6	14.8	10.0	-32.3	-37.8	-14.5

자료: www.gtis.com/gta/

표 6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2019년9월~12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9년	2019년 9월~2019년 12월				12월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태국	526.7	17.2	17.4	37.9	66.3	75.0	-22.0	-41.4
	베트남	479.1	41.5	35.0	31.7	33.1	4.4	-42.8	-66.9
	파키스탄	603.6	3.7	6.9	46.9	116.8	149.1	97.3	76.3
	기타	894.3	114.3	117.9	139.0	155.9	12.2	123.9	159.7
	합 계	2,503.7	176.7	177.1	255.4	372.1	45.7	37.0	-17.5
이 중 - 장립종쌀 (백미)	태국	319.9	7.3	6.6	18.2	66.3	264.5	10.7	-32.7
	베트남	353.6	27.3	18.2	12.4	33.1	166.1	121.4	-73.4
	파키스탄	445.7	1.1	3.7	35.4	116.8	230.0	173.2	90.5
	기타	861.6	113.1	114.8	127.9	155.9	21.9	71.5	184.3
	합 계	1,980.7	148.9	143.3	193.9	372.1	91.9	78.5	-15.5
밀	러시아	36.5	2.6	0.1	0.3	2.0	681.3	69.1	33.4
	호주	0.2	0.0	0.0	0.0	0.0		-100.0	-62.6
	캐나다	2.4	0.2	0.3	0.4	0.3	-15.7	22.9	-5.1
	기타	3.7	0.2	0.2	0.6	1.5	132.8	1,046.2	748.4
	합 계	42.8	3.0	0.6	1.3	3.8	202.6	127.3	38.5
보리	호주	2,315.7	103.1	46.8	0.0	0.0		-100.0	-44.6
	캐나다	1,459.5	40.6	39.2	149.8	165.9	10.7	52.3	-13.1
	우크라이나	873.9	538.9	280.8	41.9	0.0	-100.0		128.6
	프랑스	1,183.0	168.4	292.9	209.6	67.5	-67.8	2,147.9	106.0
	기타	96.6	4.1	16.8	8.7	6.2	-28.1		18,309.0
	합 계	5,928.8	855.2	676.5	410.0	239.7	-41.5	67.3	-13.0
옥수수	미국	317.7	63.0	58.3	0.5	59.9	11,636.3	2,774.9	1.7
	라오스	141.7	5.8	18.4	25.6	75.5	195.3	175.2	1.7
	불가리아	4.4	0.0	1.0	0.0	2.2			3,259.1
	우크라이나	4,137.7	32.0	0.0	58.5	563.6	864.0	58.0	41.2
	미얀마	116.4	38.7	10.9	8.3	10.9	32.0	-43.7	15.8
	기타	73.2	0.1	2.6	5.6	21.9	290.8	95.0	85.6
	합 계	4,791.1	139.6	91.1	98.4	734.0	645.8	76.1	36.1
대두	미국	17,014.6	1,730.2	1,147.3	2,555.4	3,093.5	21.1	4,364.0	2.2
	캐나다	2,265.4	73.7	3.7	4.8	15.6	227.6	-98.1	26.4
	브라질	57,676.5	4,788.9	3,793.2	3,857.5	4,832.3	25.3	10.2	-12.7
	아르헨티나	8,791.6	976.5	959.9	1,417.1	1,305.1	-7.9	599.3	500.5
	기타	2,837.7	627.3	277.2	443.0	296.9	-33.0	9.9	38.4
	합 계	88,585.9	8,196.6	6,181.4	8,277.8	9,543.4	15.3	66.8	0.6

자료: www.gtis.com/gta/

- 2019년 12월 대두 수출량은 10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32.3% 감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7.8% 감
- 2019년 12월 4대 곡물(쌀, 밀, 보리, 옥수수)의 수입량은 1,349.5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76.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61.9% 증가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옥수수 734천 톤(5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쌀이 372.1천 톤(27.6%), 보리가 239.7천 톤(17.8%) 순
- 2019년 12월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 전월에 비해 41.5%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67.3% 증가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³⁾ 2019년 12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45.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
 - 12월 쌀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318.8천 톤으로 85.7%를 차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파키스탄 31.4%, 태국 17.8%, 베트남 8.9% 순
- 2019년 12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76.1% 증가, 누적기준 1~12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6.1% 증가
- 2019년 12월 밀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202.6%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27.3% 증가. 누적기준 1~12월 밀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8.5% 증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52.8%로 비중 차지
- 2019년 12월 대두 수입량은 9,543.4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5.3%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66.8% 증가,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50.6%, 미국 32.4%, 아르헨티나 13.7%, 캐나다 0.2%
→ CR₃ 96.9%

3)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50%, 비국영무역(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50%를 차지. 2017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이며 장립종과 중단립종이 각각 50%(266만 톤), 50%(266만 톤) 차지

◆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2020년 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2.7억 달러로 전월 대비 8.2%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2.2% 증가
-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47.0%), 채소(23.4%), 식량(13.3%), 특용·잠사(8.7%), 축산물(3.2%)
- 상위 10개 품목: 메현미(9.7%), 전분박과 유사한 박류(6.7%), 김치(4.7%), 캄프시컴속(4.4%), 한약재(3.0%), 당면(3.0%), 소스, 소스 조제용품(2.9%), 개사료(2.5%), 채소류 조제품(2.4%), 캔디류(2.1%) → CR₁₀ 41.4%

표 7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19년 12월 ~ 2020년 1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9년 12월~2020년 1월			1월 증감률		
			12월	2020년 1월	2019년 합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산물	식량	곡류	45473	28513	153169	-37.3	53.8	53.8
		서류	709	650	8324	-8.3	-2.2	-2.2
		두류	16994	6712	101392	-60.5	111.9	111.9
		전분	5509	1503	32069	-72.7	47.8	47.8
		계	68685	37379	294954	-45.6	59.8	59.8
	채소		66405	65700	659725	-1.1	6.4	6.4
	과실		6752	6921	79031	2.5	-13.7	-13.7
	화훼		2551	3120	27244	22.3	-1.3	-1.3
	버섯		4358	2551	34932	-41.5	-15.3	-15.3
	특용·잠사	채유종실	21412	11494	182059	-46.3	-26.8	-26.8
		차류	497	625	5316	25.6	75.9	75.9
		연초류	119	583	5252	391.8	38.8	38.8
		인삼류	322	105	2671	-67.5	-70.8	-70.8
		한약재	8249	9810	80111	18.9	23.6	23.6
		잠사류	564	1860	12572	230.0	71.6	71.6
계		31162	24477	287981	-21.5	-5.3	-5.3	
농산가공품		116568	132043	1337694	13.3	-6.5	-6.5	
소 계		296480	272191	2721561	-8.2	2.2	2.2	
축산물	산동물		476	630	7055	32.5	17.3	17.3
	육류		4614	4608	52534	-7.2	17.8	17.8
	난류		480	229	3417	-52.3	-10.8	-10.8
	낙농품		35	45	76	28.0	2160.0	2160.0
	기타 축산물		2618	3342	13547	27.7	11.2	11.2
	소 계		8223	8854	76629	3.2	14.8	14.8
합 계			304703	281046	2798189	-7.9	2.5	2.5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 2020년 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약 5,581만 달러로 전월 대비 34.3%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6.9% 감소

-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68.1%), 과일(15.6%), 축산물(10.5%), 특용·잠사(4.9%)
- 상위 10개 품목: 자당(8.8%), 알코올 미함유 음료(6.6%), 조제품기타(6.0%), 조제분유(5.2%), 맥주(4.3%), 기타과실주스주기제것(3.8%), 홍삼(3.3%), 포도(신선)(3.3%), 프로필렌클리콜(3.2%), 과일주스음료(3.1%) → CR₁₀ 47.6%

표 8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19년 12월~2020년 1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9년 12월~2020년 1월			1월 증감률		
			12월	2020년 1월	2019년 합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795	143	3190	-82.0	-16.8	-16.8
		서류	32	5	576	-85.1	-91.2	-91.2
		두류	0	14	57	6,900.0	4,566.7	4,566.7
		전분	4	22	71	431.0	193.4	193.4
		계	831	184	3893	-77.9	-21.0	-21.0
	채소		3345	332	18381	-90.1	-35.5	-35.5
	과실		13314	9737	106337	-26.9	-16.5	-16.5
	화훼		369	19	1304	-94.8	-91.1	-91.1
	버섯		0	0	202		-100.0	-100.0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1	0	84	-100.0	-100.0	-100.0
		차류	47	11	929	-76.4	-92.5	-92.5
		연초류	717	0	14752	-100.0		
		인삼류	8256	2882	70108	-65.1	-48.0	-48.0
		한약재	10	140	963	1,374.7	16.8	16.8
		잠사류	0	0	143			
계		9031	3034	86980	-66.4	-48.0	-48.0	
농산가공품		58042	42508	662333	-26.8	-12.8	-12.8	
소 계		84932	55813	879431	-34.3	-16.9	-16.9	
축 산 물	산동물		0	0	265			
	육류		153	140	1292	-8.7	-33.8	-33.8
	난류							
	낙농품		8263	5061	96949	-38.8	20.0	20.0
	기타 축산물		2937	1362	42647	-53.6	-44.0	-44.0
	소 계		11353	6563	141153	-42.2	-4.3	-4.3
합 계			96284	62375	1020584	-35.2	-15.8	-15.8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표 9 2020년 1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메현미(nonglutinous)	27,256.4	9.7	자당	5,462.9	8.8
2	전분박과 유사한 박류	18,678.7	6.7	알코올 미함유 음료	4,104.9	6.6
3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13,166.7	4.7	조제품 기타	3,735.7	6.0
4	캐프시컴속 열매(냉동)	12,419.8	4.4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	3,232.4	5.2
5	한약재	8,454.4	3.0	맥주	2,694.9	4.3
6	당면	8,347.4	3.0	기타과실주스 주기제것	2,349.9	3.8
7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8,008.6	2.9	홍삼(기타/본삼)	2,073.6	3.3
8	개사료	6,970.3	2.5	포도(신선)	2,057.4	3.3
9	채소류 조제품	6,674.2	2.4	프로필렌글리콜	2,003.6	3.2
10	캔디류	5,921.3	2.1	과실주스 음료	1,952.5	3.1
11	땅콩	5,047.0	1.8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1,870.4	3.0
12	냉동채소	4,658.1	1.7	유자(기타방법 조제)	1,769.7	2.8
13	화분	4,539.4	1.6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1,627.8	2.6
14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4,425.4	1.6	캔디류	1,447.2	2.3
15	마늘(냉동)	3,672.5	1.3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1,084.8	1.7
16	아조디카본아미드	3,451.5	1.2	아미노산(기타)	1,082.4	1.7
17	아미노산(기타)	3,112.9	1.1	견과류 조제품	898.9	1.4
18	광천수와 탄산수	3,049.0	1.1	밀크, 크림	869.1	1.4
19	대두(콩나물용)(기타)	3,028.4	1.1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807.8	1.3
20	전화당, 당시럽 혼합물	2,982.1	1.1	락트산의 에스테르	695.6	1.1
21	조제품 기타	2,668.9	1.0	소주	686.8	1.1
22	과실견과기타	2,460.6	0.9	곡류 조제품	666.9	1.1
23	미과	2,413.2	0.9	과실견과기타	570.9	0.9
24	들깨	2,410.5	0.9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556.6	0.9
25	젤라틴	2,387.7	0.9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513.1	0.8
26	당근(신선, 냉장)	2,338.3	0.8	유장분말(기타)	482.4	0.8
27	포도당	2,288.3	0.8	베이커리 제품	462.0	0.7
28	동식물성 유지 그 분획물	2,257.9	0.8	고추장	411.5	0.7
29	채유종자와 과실의 분 조분	2,144.3	0.8	스위트 비숫킷	342.7	0.5
30	팥	2,107.6	0.8	홍삼조제품	338.6	0.5
31	낙시용 떡밥 이외 기타	2,021.8	0.7	인삼음료	335.9	0.5
32	닭고기	2,000.2	0.7	소나 마속동물의 원피	296.1	0.5
33	양모로 만든 것	1,921.3	0.7	설탕과자류	266.7	0.4
34	스테비오사이드	1,819.8	0.6	고추 · 단고추	266.6	0.4
35	라신의 염	1,709.5	0.6	장류	233.3	0.4
	합계	186,814.0	66.7	합 계	55,618.7	89.2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